

수탁회사보고서

수탁회사보고서는 투자신탁의 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수탁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『간접투자자산운용업』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수탁회사명 : (주) 우리은행
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2-4898

1. 투자신탁의 개요

가. 간접투자기구명 : 도이치코리아채권투자신탁1-1호

(Class 내역 : Class A, Class I, Class P, Class U, Class Ce)

나. 간접투자기구 유형 : 종류형 간접투자기구 - 채권형

다. 수탁기간 : 2011.10.13 ~ 2012. 10. 12

라. 자산운용회사 : 도이치자산운용

마. 판매회사 : 교보증권,경남은행,골든브릿지증권,대우은행,대신증권,동양증권,동부증권,메리츠증권,미래에셋증권,신한은행,외환은행,우리은행,우리투자증권,유진투자증권,하나대투증권,한화증권,한국투자증권,현대증권,하이투자증권,HMC증권,HSBC은행,NH투자증권

2.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

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사항

해당사항 없음

4. 수익자총회 의결사항

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적시한 경우의 그 내용

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

간접투자자산운용업 시행령 89조에 1항 2호에 따라 본 펀드는 총자산액 50억 초과 100억 이하로 6개월간 신규설정이 없어 회계감사 없음

7. 법령확인사항

투자설명서가 법령 ·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되는지 여부

- 부합함

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
-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음

□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가치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간접투자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적정히 산출하고있음.

□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,신탁약관(투자회사 정관)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 내역

위반항목	위반내용	위반일	해소일	비고
채권신용등급 BBB-이상 (신성건설89, 신성건설91)	신용등급 없음	08.10.31	-	금감원 보고

※ 신성건설 및 트레저시티유동화 신용등급 하락으로 위반되었으며 작성일 현재까지 지속.

□ 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도이치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있습니다.

8.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운용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